

등록번호	보건환경처-316	부장(업무대행)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17.06.19.	이기준	최영도	조진환	김석태	06/19 김태호
결재일자	2017.06.19.	협조 기술본부 본부장 최정균 승무본부 본부장 정일봉 차량본부 본부장 한재현 고객센터본부 본부장 김병선 경영지원실 실장 김성완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방칭번호	사장-40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안)

2017. 6.



Seoul Metro

안전관리본부  
 [보건환경처]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

#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안)

---

2017. 6.



Seoul Metro

**안전관리본부**  
**[보건환경처]**

#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안)

구의역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 지적사항(부서별사업장→본부별사업장)을 개선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립하고자 함.

## I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 ❑ 종합안전보건진단 보고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9.9)
  - 본부장이 현업의 인사권한과 도급계약 등에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있음에도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없어 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 요구(1~4호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조직 변경 요구(5~8호선)
-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기구)
  -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는 경영지원실, 고객센터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로 한다.
- ❑ 임원회의 보고('17.6.8) :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안)

## II 현 황

### ❑ 통합 전 운영

구 분	1 ~4호선	5 ~ 8호선
사업장 수	● 4개 사업장	● 45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경영지원본부장, 고객사업본부장, 운영본부장, 기술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44개 현업 부서장
관리감독자	● 본사 : 부서장 ● 현업 : 부서장, 팀장, 부장 등	● 본사 : 처장 ● 현업 : 부장, P/L, 역장 등
안전관리자	● 경영지원본부 : 2명 ● 고객사업본부 : 3명 ● 운영본부 : 7명 ● 기술본부 : 5명	● 45명(45개 사업장)
보건관리자	● 경영지원본부1명, 고객사업본부1명, 기술본부 1명, 운영본부 : 6명	● 본사 : 1명 ● 현업 : 7명이 권역별로 관리

### III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방안

####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17.6.7 기준)

계	경영지원실 사업장	고객서비스본 부 사업장	차량본부 사업장	승무본부 사업장	기술본부 사업장
17,346명	1,429	4,220	3,403	3,430	4,864

#### ■ 법적선임 요건

구 분	운영방안	비 고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지원실장</li> <li>• 고객서비스본부장</li> <li>• 차량본부장</li> <li>• 승무본부장</li> <li>• 기술본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li> <li>- 법 제1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li> </ul>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 부서장</li> <li>• 현업 : 부서장, 팀장, 부장 역장, 관리소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4조 : 관리감독자</li> </ul>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지원실 : 2명 이상</li> <li>• 고객서비스본부 : 2명 이상</li> <li>• 차량본부 : 2명 이상</li> <li>• 승무본부 : 2명 이상</li> <li>• 기술본부 : 2명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5조 : 안전관리자</li> <li>*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시 2명 이상(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는 전담) 선임</li> </ul>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지원실 : 1명</li> <li>• 고객서비스본부 : 2명</li> <li>• 차량본부 : 10명</li> <li>• 승무본부 : 2명</li> <li>• 기술본부 : 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6조 : 보건관리자</li> </ul>

#### ■ 본부별 안전관리자 운영 방법

- 추진방향 : 본부별 정원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운영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 11명

계	경영지원실 사업장	고객서비스 본부 사업장	차량본부 사업장	승무본부 사업장	기술본부 사업장
11명	2	2	2	2	3

\* 기술본부는 2명 선임 후 1명은 추후선임 예정

□ **본부별 보건관리자 운영(안) : 17명**

계	경영지원실 사업장	고객서비스 본부 사업장	차량본부 사업장	승무본부 사업장	기술본부 사업장
17명	1	2	10	2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등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li> <l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등</li> </ul>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li> <li>•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li> </ul>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불안전 위험요소 발굴</li> <li>•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의 조언·지도</li> <li>•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등</li> </ul>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 평가,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의 조언·지도</li> <li>•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등</li> </ul>

**IV 향후계획**

□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외부전문가 특강**

- 대 상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
- 장 소 / 시 기 : 인재개발원, '17. 6월말
- 교 육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안전관리 방향 등

☐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6h 이상	6h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등</li> </ul>
안전관리자	34h 이상	24h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방법에 관한 사항</li> </ul>
보건관리자	34h 이상	24h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li> </ul>
관리감독자	연간 16h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 분기 3h</li> <li>• 현업 : 분기 6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ul>

※ 해당 직위에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보건환경처는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안전·보건관리자 일괄신고 ('17.6.13)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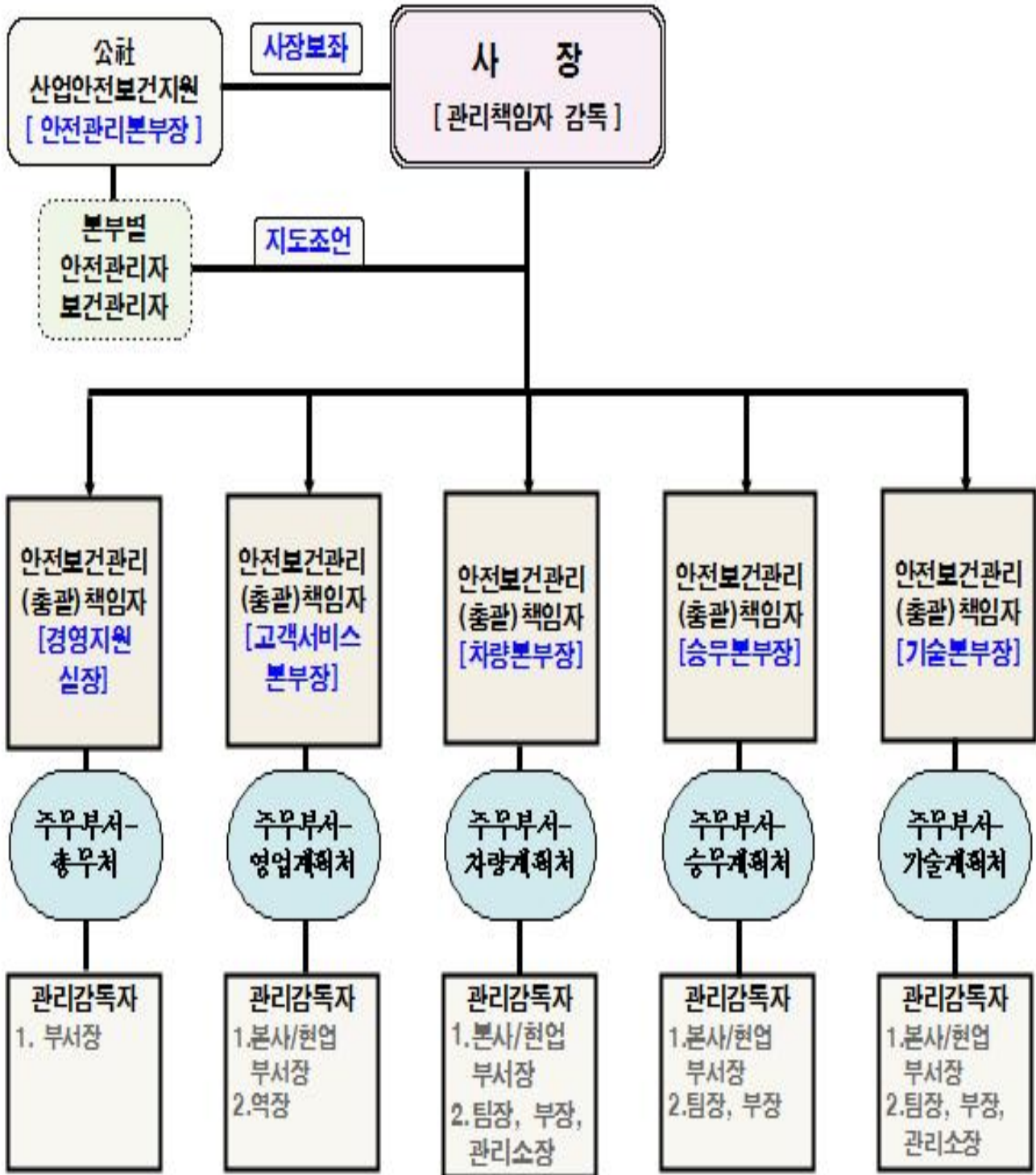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협의회로 대체**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부재로 4개의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 후 '17.6월중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 예정

-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1부.
  2.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1부.
  3.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 불 입 #1】

■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건관리 체제



## 【 불 입 #2】

### ■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연번	사업장명	소 속	사 번	직급	직종	성 명	자 격
1	경영지원실	총무처	19890390	3급	건축	윤희태	산업안전산업기사
2	경영지원실	보건환경처	12120063	6급	사무	김근민	산업안전산업기사
3	고객서비스본부	영업1처	19930399	4급	사무	곽금하	산업안전기사
4	고객서비스본부	영업1처	19940208	5급	사무	유제평	산업안전기사
5	차량본부	차량1처	19950044	5급	차량	이수원	산업안전기사
6	차량본부	차량2처	11960919	4급	차량	장효달	산업안전기사
7	승무본부	승무계획처	19950803	5급	승무	서승권	산업안전기사
8	승무본부	승무계획처	20140063	7급	승무	이호영	산업안전기사
9	기술본부	기술계획처	19930829	4급	정보통신	이현구	산업안전산업기사
10	기술본부	기술계획처	20070161	7급	전기	백승민	산업안전기사

※ 기술본부 1명은 추후 선임 예정



## 【 불 입 #3】

### ■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벌칙 부과 기준

구 분	세부내용	벌 칙
제23조1항~3항	<p>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li> <li>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li> <li>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li> </ol>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각 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p>
제24조제1항	<p>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li> </ol>	
제23조1항~3항	<p>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li> <li>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li> <li>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li> </ol>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p>	<p>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p>

구 분	세부내용	벌 칩
	<p>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제24조제1항	<p>①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li> </ol>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제26조제1항	<p>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p>	
제29조제8항	<p>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li> <li>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li> </ol>	1천만원 벌금
제29조제1항	<p>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li> <li>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li> </ol>	500만원 벌금

구 분	세부내용	벌 칙
제29조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500만원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5.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8.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9.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1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1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12.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3.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4.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15.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16.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 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5	10	2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6.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10	20	50
17.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1)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5	10	20
		다)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5	10	20
18.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제5항제8호		5	10	15
19.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20.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